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해설

윤 성 호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 1. 입법의 의의 및 추진경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자신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제도는 산업화 이후 생산 및 유통의 기계화·복잡화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소비자의 적절한 피해구제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결합상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나 확대손해(결합상품에 의해 야기된 결합상품 이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제품이 복잡·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조물책임제도는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처음 확립되었다. 즉,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엄격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각 주로 확산되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불법행위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유럽에서는 EC가 1985년 「결합제품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명령 및 규칙의 통일에 관한 위원회 지침」을 채택하면서 각 가맹국들이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5년 국민생활심의회의 도입 건의를 시발로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1994년에 입법을 완료하여 '95년부터 시행하였다. 기타 중국,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현재 전세계에서 약 30여개국이 동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제조물책임이 소개되어 입법의 타당성이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982년에 김순규 의원 외 25인이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학계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1994년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의 하나로 입법전의가 있기도 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입법추진이 시작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면서부터이다.

1998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안을 만들었으며, 같은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부에서는 1999년 7월 동 시안을 기초로 「제조물책임법안」을 성안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후 11월 4일 의원입법(추미애 의원 외 104인) 형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2.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이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 가. 적용대상

연혁적으로 볼 때 제조물책임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대량생산·판매된 공업제품의 안전성을 제조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자인 소비자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전된 법리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를 기초로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있다.

동법에서도 제조물의 정의를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행위와

부동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의 개념에 유체물 뿐 아니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등 무체동산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만, 동산의 경우에도 제조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미가공 농축수산물이나 광산물 등은 제외된다.

여기에서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공’이라 함은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예: 엘리베이터 등)과 완성품에 포함된 원재료나 부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 나. 결함의 정의

제조물책임에 있어 결함은 책임추궁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결함이 없으면 제조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법에서는 ‘결함’을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무과실책임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설계·표시상의 결함’에 대해 이른바 위험·효용분석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타 성문법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서 미국의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참고로 동법에서 ‘안전성’이라 함은 기능·성능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과 관련이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 다. 제조물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완성품이나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이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가 국제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판매자 등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내에 피해자에게 이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라. 결합책임 원칙의 채택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사정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책임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함 및 손해의 존재,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며,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제조물책임은 결합제품으로 인해 당해 제품이외의 사람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 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법상의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마. 제조업자 등의 면책사유

제조업자와 공급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것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도난당하거나 유실한 경우로서 이때는 제조물이 제조업자의 의사에 의해 공급된 것도 아니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향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책을 인정해 준 것이다.

다만, 제품이 도난품인지 또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통된 제품인지를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요건 조항이 아닌 면책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고 있다.

둘째 제조물 공급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합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이는 과학·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제조물의 결함이 법령상 기준을 따름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령상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고 바로 이 기준을 따름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령상 기준을 따랐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서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품결합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에 관한 지시를 따름으로써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러한 면책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자 등이 제품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두번째, 세번째 및 네번째 면책사유를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품공급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결함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리콜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하도록 하는 사후적 책임규정이다.

#### 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일반적으로 권리관계를 무한정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피해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도 민법에 준하여 동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제조업자와 손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동권리는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상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3년의 소멸시효 기간과 10년의 제척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 사. 기 타

동법에서는 이를 규정 이외에도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물책임 주체가 다수인 경우(예: 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각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책임주체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책임의 분담정도를 일일이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민법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규정에 해당될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법상 과실상계규정이다. 따라서 손해발생에 있어 제품의 결함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과실분을 상계한 후 나머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결함' 및 '손해와 결함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 글을 맺으며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및 그 시기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동법이 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효과는 소비자 권익의 제고이다. 즉 결합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입증책임이 경감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수출품과 수입품간 역차별 문제의 해소이다. 그동안 우리 수출품은 대부분 해외시장에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적용 받는데 반해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는 보호받지 못해 왔으나, 동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다. 우리 기업들이 다가오는 뉴 밀레니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법 제정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이 제고됨으로써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협력하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동 제도에 적극 대응해 나갈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부담 축소를 위해 저렴한 보험상품의 개발·보급을 유도해나가는 한편,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보완 및 지원책을 펴 나갈 것이다. 기업도 제조물책임제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과감한 기술 및 안전에 대한 투자,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도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에게만 돌리기보다는 안전성을 살펴보고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노력하여 제품으로 인한 사고 자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

## ＊ 시사 용어 해설 ＊

### ▶ CKO (chief knowledge officer)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적절한 활용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영이 대두되면서 최고 지식경영자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CKO는 조직내 지식경영과 지식관리를 종지휘하는 고급임원을 말한다. 기존의 CIO(최고정보기술담당임원)보다 더 전문적이고 한단계 높은 위치라고 보면 된다. 유수 기업일수록 CKO의 역할이 확대되고 막중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CKO의 역할은 조직내부 구성원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발굴해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공유시스템 기반구축, 사내 지식활용을 위한 지식문화 조성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CKO는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종류의 지식이 조직의 경쟁 우위 강화에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는 일도 한다. 국내에서 CKO 제도는 아직 도입단계다. CKO를 두고 있는 국내기관과 기업은 열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지식자원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CKO의 유무가 21세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